

Mc. c. 10

한국 여성의 전화 개원 9주년 기념
아내구타 공개토론회 자료집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여성의 전화는…

우리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억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남편의 아내구타, 외도, 부부갈등, 시집갈등 등
가정문제에서부터 직장 내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제반 성폭력 문제에까지 그 눈을
넓혀 주부와 미혼여성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 개원9주년 기념
아내구타 공개토론회 자료집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한국 여성의 전화

머리말

여성의 전화가 아내구타 문제를 사회문제화하면서 출발한 지 어느덧 9년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여성의 전화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갖가지 성폭력문제를 상담하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내구타 문제는 아직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자리잡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전화가 마련한 매맞는 아내들을 위한 비상휴식처인 「쉼터」를 거쳐간 피해여성들의 호소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여성의 전화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매맞는 아내의 문제를 다시금 사회여론화하고 그 해결을 위해 법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쉼터」의 필요성과 아내구타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모든 것에 대항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위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후원회원 및 내담자 여러분, 그리고 여성의 전화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2. 6. 11.

한국 여성의 전화

차 례

머리말	3
1. 내담자 증언 : 송 심 (쉼터 이용자)	9
2. 아내구타의 실태 : 정영애 (여성의전화 상담1부장)	16
3. 아내구타의 지속요인	
1) 가족제도 : 김주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7
2) 법 제도 :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44
4. 아내구타의 대책 : 이화수 (아주대 정외과 교수)	55
5. 부록	
1) 구타설문지	66
2) 여성의 전화 발간 자료집 목록	68
3) 아내구타 관련 도서목록	69
4) 아내구타 관련 신문스크랩	70

1. 내담자 증언

수없이 넘나든 죽음의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송 심 (쉼터 이용자)

수없이 넘나든 죽음의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송 심 (쉼터 이용자)

저는 1956년 8월 23일, 한 평범한 가정의 2남 3녀 중 셋째딸로 태어났습니다. 그후 서울에서 줄곧 성장하여 대학까지 이곳에서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게 남겨진 건 골병이 든 몸과 젊기고 젊은 정신과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짓이겨진 가슴뿐입니다. 그 불행은 한 남자와의 결혼으로 시작되었고, 곧 벗어나지 못했던 제 어리석은 미련으로 깊어졌습니다. 허나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 지옥 같은 생활의 실체를 정확히 가름해 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과 결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여동생이,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귀하디 귀한 딸이 정말 우연치 않게 빠질 수 있는 불행의 시커먼 소용돌이인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1982년에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는 몹시 쾌활하고 친절했으며 차 안에 들어온 모기까지도 자신은 살생을 싫어한다며 창문을 열어 내보내는 등 무척이나 여린 심성의 소유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처럼 백해무익한 모기조차 죽이지 않던 그가 자기 아래에게 2시간, 3시간씩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잔혹한 인간성을 갖었으리라고는 정녕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번 구타에 대한 용서가 낳은 비극

첫번 구타는 결혼 후 3개월쯤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술이 만취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친정에서 자기를 우습게 보고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곤 설명할 틈도 없이 다짜고짜 제게 달려들어 2시간 가까이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주먹으로 수 차례 얼굴을 강타하며 발길질로 제 배와 팔다리 등 닥치는대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지쳐쓰러져 아주 달디단 단잠을 자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했습니다. 방금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실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름해 봐야 할지 모르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제 흥취한 몰골을 보곤 기절할 정도로 놀라며 새파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정말 자신이 절 이렇게 만들었나며 자기는 술이 취해 기억도 나지 않고 인정도 할 수 없다며 처참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정에서 당신을 업신여긴 게 무엇이며, 설사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날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는 일 이냐”고 하자 “단지 내가 성격상 과민한 탓에 오해하고 실수한 것이니 절대 친정 가서 팬한 얘기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그렇게 하였고 그 첫번 구타에 대해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를 받았을 것이 사랑일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고질적인 문제의 시작인 줄을 깨닫지 못 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구타는 점차 습관적인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반찬의 간이 맞지 않는다고 때리고, 거실 바닥을 하이타이 풀어 닦지 않았다고 때리고, 티스푼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사웠다고 때리고, 대학 때 제가 모은 팜플렛을 버리지 않았다고 너만 꿈이 있느냐고 때리고, 자기 회사 경리가 전화 많이 쓴다고 너처럼 인간쓰레기 같은 년이라며 때리고, 자기 동업자가 비열한 인간이라며 너처럼 간악하다고 때리고, 노사분규 심하여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너 같은 인간들이 데모해서 그렇다고 때리고……

정말 제 손발에 마비가 올 정도로 따지고, 덮어 씌우고, 추궁하며 주먹으로 뺨을 연속으로 돌려치고,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고, 때론 경찰곤봉과 맥주병과 의자를 들어 내리찍으며, 런닝을 벗어 비비꼬아 목을 졸라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이 찢어지며, 이가 부러지고 머리속이 찢어지며 온몸의 타박상이 가실 날이 거의 없이 하루하루 연명해 갔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불쾌감을 스스로 고조시켜 가며, 마지막 분노의 절정에선 닥치는대로 억지를 쓰며 구타를 하고는 마치 힘든 등반 뒤에 근육과 정신의 긴장이 풀린 사람처럼 아주 느른한 단잠에 정신없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자 더욱 심해진 구타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술주정이 심한 것인가 했습니다. 그도 평계를 술에 미루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술도 먹게 되는데 술을 먹으면 나 자신도 모를 일을 저지르니 그저 내가 술을 끊는 수밖에 없다. 술을 끊겠다. 나를 조금만 기다려다오.”하며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허나 한달에 한두 번 정도의 광란 —

그건 이미 부부싸움이 아니라 지옥의 광란 그 자체였습니다 — 바로 그 와중에서도 저는 년년생 사내아이 둘을 갖게 되었고 아이가 둘이 생기자 그의 폭행과 들볶음은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아이가 둘씩인 네가 가면 어딜 갈 것이며, 이 가정을 깨고 간다면 자식들에 대한 의무마저 저버린 가정파괴범이라는 대전제하에 안심하고 폭행을 가했고, 폭행 후에는 처음처럼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없어지더니 해가 갈수록 제가 자기를 화나게 만들어서 구타를 유발시킨다는 등 저에게 책임 전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에 스스로 놀라고 자책하고 고치려 노력할 때는 너무 아프고 무서워도 남편을 고쳐가며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구타 양상도 포악해지고, 저를 구타 유발자로 몰아세울 때는 절망과 공포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1년쯤 후 저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평생 구타하신 구타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사실은 날이 가면 혹시 나아지지 않을까 하던 제 최후의 희망을 꺾어버린 또 한번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결혼 3년간은 2살, 3살의 아이 둘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또 잘살고 있는 줄만 아시는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여자가 가정 안의 일을 밖으로 확대시키는 게 수치스러워서 고스란히 앉은 자리에서 매를 맞아가며 안으로 안으로 혼자 숨기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술이 만취가 되어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새벽 2시경 저의 친정집에 전화해서 악을 쓰며 당장 오라고 하여 저의 어머니께서 와서 처음 보시곤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울지조차 못 하여 새파랗게 질려 있고, 저의 머리는 잡아뜯겨 산발이 돼 있으며, 얼굴은 옆으로 직사각형이 되도록 부어 있었고, 보라색의 눈두덩도 통통부어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가히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깊은 잠에 빠져 자다가 아침에야 눈을 뜨고 술이 덜 깐 상태로 어머니를 그냥 가시게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술이 덜 깐 사람하고 얘기해 봤자 좋은 말 나올 것 같지 않고, 또 너무도 엄청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그냥 가셨습니다. 그날, 일하는 아이가 와서 저를 보고는 너무 놀라 시어머니에게 알려서 시어머니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걸으로는 당신 아들을 야단치시는 것 같더니 나중엔 “나는 40년을 끔찍하게 맞고 살았다. 너 3년 맞고 산 건 별 큰일 아니다. 내 아들이 조금 예민한 데가 있으니 니가 눈치껏 잘 맞추고 살아야지 어떡하나? 저 어린 두 아들 두고 나가면 니가 속 시원한 꼴 있을 것 같으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를 갈던 남편이지만 그 남편마저 가고 나니 내가 이렇게 허전하고 의지할 곳이 없을 수가 없

다. 그러니 너도 때리는 남편이라도 결에 있는 게 좋은 건 줄 알아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죽더라도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옳은 것인지, 때리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복인 것인지, 3년 맞은 건 40년 맞은 것에 비해 정말 별것 아닌 것인지 그 어느 것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더 이상 머리가죽이 벗겨지도록 머리채를 잡히고 싶지 않으며, 혁대를 가지고 달려들어 목을 조일 때 산사태처럼 덮쳐오던 그 죽음의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달 중 보름 가까이를 일그러진 얼굴 형태로 있어야 하고, 술이 취해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내일 솟아오는 해를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극도의 불안이 이젠 너무도 정녕 너무도 힘겨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시도한 탈출

그후부터 전 구타 상황하에서 필사의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생명의 위협에 대한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한밤에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립니다. 새벽 2시경 2살 된 작은아일 껴안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돈도 한푼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피신하는 것,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미친듯이 뛰어내려 가는 것.

그건 공포로 눈이 뒤집혀본 사람이 아니면 아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미 부부 사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는 구타자와 구타당하는 자, 스스로의 분노에 떠는 자와 살인적인 공포에 떠는 자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끊는 방법도 많이 종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 합니다. 술은 구타의 원인이 아니라 구타의 평계이기 때문에 구타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술을 끊지 못 합니다. 또 너무 약해 보여서 그런가 하고 “왜 때리냐”며 강하게 반항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시던 소주병으로 제 머리를 내리갈기는 등 졸도할 정도로 두들겨팼고 기절하니까 겁을 내기는커녕 목욕탕으로 끌고가 샤워를 틀어대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시 두들겨팼고, 견디다 못해 결국 잘못했다고 빌어도 잘못할 일을 왜 했나며 더 때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럴지 안 그럴지 내가 어떻게 아나며 남편한테 덤빈 년은 죽어야 한다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벽에 머리를 있는 힘껏 짓찧어대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님께 상의하여 정신과 치료 좀 받을 수 있도록, 집안 어른으로서 도와달라고 해도 당신 아들이 정신병자라는 소리 들을까 봐 겁이

나시는지 협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불안과 공포로 치료받는 척하며 그를 끌어들였으나, 몇 번 다니더니 병원약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다면 강력히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안 되는 것 같으니 신앙적으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에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며 그를 교회로 인도했으나 목사를 신격화한다, 전도사가 이리 앉아라 저리 앉아라 하는 것 보기 싫다는 등 트집을 일삼으며 결국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구타 습관을 고친다는 건 너무도 불가능해 보였으며, 날이 갈수록 제 육체와 정신력의 한계도 바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타는 은폐된 살인미수

그래서 일단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아야지만 구타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겠기에 별거를 요구했으나 끝내 협의하지 않았고 그럼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이를 둘색이나 두고도 가정을 깨겠다는 거냐?”며 갖은 억지를 쓰며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내가 데리고 나가 키우겠다”고 하면 “왜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 고생시키냐,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하고, 그럼 “아이들 두고 나가겠다” 하면 “너 나가면 애들을 해외 입양시키든지 셋이 죽겠노라”며 4살 된 큰아이 목에 기저귀를 감는 등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아이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또 아이 때문이라지만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없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살래야 살 수도 없는 끝없는 불행의 소용돌이에 빠져 오랜 기간 허우적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분명 깨닫습니다. 그 참혹한 생활은 그만 끝나야 합니다.

누가 그걸 부부싸움이라 하겠습니까?

그건 은폐된 살인미수이며,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잔혹한 고문인 것입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게 제발 도와 주십시오. 그들은 구타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어떤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타를 스스로 합리화하며 옹호하고 있기에 가정 내 폭력을 범죄화하는 사회여론과 구타자를 처벌하는 구체적 법조항으로만이 그 피비린내나는 끔찍한 폭행을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남편이 제 아낼 죽일 것이며, 설마 아빠가 제 아일 죽일 것 이나고, 여러분 가치판단으로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그건 설마가 아니고 바로 제가 10년을 짓이겨지며 수없이 넘나든 죽음의 참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2. 아내구타 실태

정영애

(여성의 전화 상담1부장)

1. 머리말

2. 아내구타 상황

- (1) 발생 빈도
- (2) 구타방법과 발생 간격
- (3) 구타로 인한 피해 정도

3. 구타실태의 특성

- (1) 일반적 특성
- (2) 구타가정의 특성
- (3) 구타 관련 특성

4. 결론

1. 머리말

한국 여성의 전화는 지난 1983년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불식시키기 위해 탄생되었다. 그간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대중교육, 법적 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폭력이 끊붙이지 못 하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정도가 심각해져서 성폭력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인신매매, 강간, 성추행 등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유형, 무형의 폭력 중에서 특히 아내구타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못 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하여 부부간에는 의해 싸움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툼의 와중에서 폭력이 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제 맛이 난다”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편은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한 당연히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구타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려 하면 사람들은 혼히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여자들만이 맞고 사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해 온 매맞는 아내들의 피해 정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구타 방법도 점차 잔인해지고 있다. 고막이 터지고 이빨이 나가는가 하면 다리뼈가 부러져 기부스를 해야 하고 심지어는 아내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성냥을 그어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불구로 만든 사례도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너 같은 것은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남편의 끊임없는 협박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진다든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구타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타하는 남편의 세습되고 학습된 폭력성에 근거하여 아내구타의 문제가 발생하고 습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모든 여성의 결혼할 것이 요구되는데 결혼한 여성들 중의 40% 이상이 구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아내구타’는 모든 여성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를 통하여 아내구타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온 '아내구타' 문제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사회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실태보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1) 여성의 전화 상담은 전화상담, 면접상담, 컴퓨터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실태보고는 1990년부터 1991년도의 면접상담 중 396건만을 분석하였다.
- 2) 구타실태 파악에 있어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응답, 불충분한 응답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 3) 구타당하는 아내 중 상담을 요청해 온 경우에 한한 분석이므로 전반적인 아내구타 실태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 아내구타 상황(아내구타 피해 실태)

(1) 발생 빈도

- 여성의 전화가 1983. 6. 13. ~ 1992. 5. 30. 까지 받은 총 상담은 30,903건으로 이 중 구타상담은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는 내담자가 구타문제를 주 호소내용으로 상담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머지 68%를 차지하고 있는 외도, 시집갈등, 부부갈등, 강간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구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악화되면 언제라도 심각한 구타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이다.
- 여성의 전화에서 면접상담을 받기 시작한 1985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받은 총 면접상담은 1762건이며 이 중 구타상담은 67%에 달한다.

(2) 구타방법과 발생 간격

구타방법을 보면 (<표1>), 손발로 구타하는 경우가 76.5%로 가장 많고 닦치는대로 46.7%, 흉기사용이 29.1%, 가둬놓고 때림 18.4%, 웃벗기고 때림 10.6%, 담배불로 지침 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흉기 사용의 경우 담배불로 지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3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타할 때 구타자의 감정상태가 충동적이며 적대감과 잔인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일정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타 당시 주변에 있는 집기들, 즉 칼, 낫, 협대, 쇠파이프 등 눈에 뜨이는 것 모두가 흉기로 동원되어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여 치명적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구타 발생 간격을 보면 (<표2>), 월 4회 이상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경우가 50.7%로 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아내구타는 부부싸움이 심한 경우 어쩌다 한번 씩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습관적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표1〉 구타방법
(중복응답)

손발로	303(76.5%)
흉기사용	115(29.1%)
닥치는대로	185(46.7%)
담배불로 지짐	30(7.5%)
웃벗기고 때림	42(10.6%)
가둬놓고 때림	73(18.4%)
기타	11(2.7%)

〈표2〉 구타발생 간격

주1회 이상	112(50.7%)
4회 미만	
월1회 이상	70(31.6%)
4회 미만	
년1회 이상	17(7.6%)
6회 미만	

(3) 구타로 인한 피해 정도

〈표3-1〉 신체적 피해 (%)

뺨 한 두차례 맞음	13(5.0)
군데군데 멍이 둘	113(43.3)
무차별구타로 통원치료	86(33.4)
온몸에 멍 또는 뼈가부러져 입원치료	47(18.3)

(91. 10~12월 전화상담 자료)

〈표3-2〉 진단서 기간

1주	12.5%
2주	37.5%
3주	37.5%
4주	12.5%

1) 신체적 피해

〈표3-1〉을 보면 군데군데 멍이 둘 43.3%, 무차별구타로 통원치료 33.4%, 입원치료 18.3%로 나타났다.

구타로 인해 51.7%가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중 50%가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매우 심각한 상해를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심각한 상해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골절상 41%, 관절탈구 21%, 칼자국 21%, 유산 11%, 인구돌출 및 파열 6%이고(김광일 보고서, 1987) 그 외에 고막터짐, 온몸에 화상입음 등과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다. 피해의 정도가 이와 같이 심한 것을 보면 남편의 아내구타가 일반인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칼로 물베는 부부의 사랑싸움이 약간 더 연장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해 매스컴에 보도된 사건 중 구타로 인한 살인사건만도 6건이 되는 것을 보아도 아내구타는 살인까지 이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 정신적 피해

아내구타는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지속적 폭력이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 이외에 그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손상을 수반하게 된다.

- 정신적 피해의 결과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 주체성의 상실과 무기력, 자아개념의 혼란과 같은 자존심의 저하
-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회통념의 수용으로 인한 죄책감
-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 소외되어 사회생활 부적응
- 가출, 자살기도, 자해, 살인 등의 행동 장애
- 우울증, 분노, 정신분열증,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 증상 초래
-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가슴답답증, 두근거림 등의 정신신체장애 등이다.

3) 자녀가 입는 피해

구타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자신이 구타당함으로써 직접적 고통을 받는다.

여성의 전화 상담 중에서도 40% 이상이 직접 구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를 당한 아이들이 입는 피해는 골절, 고막터짐, 뇌진탕, 코뼈 뿐터짐 등의 신체적 피해와 두통, 말더듬, 야뇨증, 정서불안 등 정신적 피해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폭력을 학습하여 또 다시 폭력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망된다.

3. 구타실태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1) 내담자의 특성

내담자의 특성은 나이별로는 30대 초반(31~35)이 3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0대 후반(26~30)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30대 초반 이하가 58.5%로 구타 습관이 결혼 초기부터 형성되어 지속되는 경우와 30대 초반에서 문제 해결(상담)을 위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 년수별로는 결혼 5년 이내가 3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년~10년이 25.0%이다. 학력은 46.8%가 고교 졸업(중퇴)이고 그 다음이 중졸(중퇴) 20%, 대졸(중퇴) 1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가 7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 10.6%, 단순노동 4.1%, 전문직 3.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인 여성의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참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교육수준이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여성이 구타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4〉 내담자의 특성 (%)

연령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세이상
	6(2.8)	50(23)	77(35.5)	46(21.2)	22(10.1)	16(7.2)
학력	무학	국졸	중졸(중퇴)	고졸(중퇴)	대졸	
	5(2.3)	38(17.3)	44(20)	103(46.3)	35(15.9)	
결혼년수	1년이하	2~5년	6~10년	11~15년	16~20년	26년이상
	23(10.6)	56(25.9)	54(25.0)	46(21.3)	15(6.9)	14(6.5)
직업	주부	자영업	전문직	생산기능직	판매서비스직	피고용사무직
	160(73.7)	23(10.6)	8(3.7)	4(1.8)	4(1.8)	9(4.1)

(91년 면접 자료 : 221명)

2) 구타남편의 특성

〈표5〉

(%)

연령	25세이하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	50세이상
	4(1.9)	22(10.6)	62(30.0)	57(27.5)	27(13.0)	18(8.7)	17(8.2)
학력	무학	국졸	중졸(중퇴)	고졸(중퇴)	대졸	대졸이상	
	2(0.9)	27(12.7)	34(16)	88(41.5)	56(26.4)	5(2.4)	
직업	무직	자영업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관리직	생산기능직	기타
	24(11.3)	65(30.5)	42(19.7)	22(10.3)	22(10.3)	16(7.2)	22(10.7)
월평균수입	30만이하	40~70만	80~100만	110~150만	160~200만	200만이상	
	28(16.7)	57(33.9)	53(31.5)	13(7.7)	5(3.0)	12(5.9)	

(91년 면접 자료 : 221명)

구타남편의 특성은 나이별로는 30대 초반이 30%, 30대 후반이 27.5%로 아내보다 약간 높은 연령층을 나타내고 있고 부부 모두 30대 초반이 가장 많다. 학력별로는 고졸(중퇴)이 41.5%이고 대졸(중퇴)이 26.4%로 학력 또한 아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30.5%로 가장 많고 사무직 19.7%, 무직 11.3%, 서비스직 10.3%, 관리직 10.3%의 순이다. 월 평균소득은 40만원에서 70만원이 33.9%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80~100만원으로 31.5%,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6.5%를 차지하고 있다.

(2) 구타가정의 특성

1) 가족형태상의 특징

〈표6〉 가족형태

(91년 면접 자료)

핵가족	168(80.0%)
시집과 동거	38(18.1%)
친정과 동거	4 (1.9%)

아내구타 가정의 가족형태를 보면 핵가족 80%, 시집과 동거 18.1%, 친정과 동거 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도표를 단순하게 해석할 경우 핵가족 형태의 가족 내에서 아내구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해석은 지나친 단순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핵가족 속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다른 동거가족이 없으므로 인하여 제3자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며 핵가족 형태를 이루고 사는 여성들은 아내구타를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결혼동기

구타당하는 내담자들의 결혼동기를 보면(표7-1),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경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순결 상실로 인한 경우가 27.9%, 결혼조건이 좋아 결혼한 경우가 1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애정이라는 결혼동기가 결혼 후의 긍정적 부부관계의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순결상실인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표7-2) 강간이나 임신에 의해 배우자 선택이 강요되어지거나 어쩔수없이 선택한 경우가 54.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순결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의 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고 여성의 순결을 미끼로 결혼을 강요하는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혼 전 성관계에서의 폭력이 결혼 후에는 구타의 모습으로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표7-1〉 결혼동기

애정	56(31.8%)
조건이 맞아서	21(11.9%)
순결상실	44(27.9%)
기타	50(28.4%)

(91년 면접 자료)

〈표7-2〉 순결 상실의 경우

혼전관계	45%
강간	22.7%
임신	31.8%
기타	1.5%

3) 부부관계

① 경제적 관계(생활비 관리에 있어서의 주도권 문제)

〈표8〉 생활비관리에 있어서의 주도권 문제

남편이 생활비 전체 관리	86(44.6%)
부부공동 관리	29(15.0%)
아내가 생활비 전체 관리	75(38.9%)
기타	3 (1.6%)

(91년 면접 자료)

여성의 지위를 가름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한다. 구타가정의 경우, 부부간에 생활비 관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 44.6%로 나타나서 여성이 주로 관리하는 38.9%보다 5.7%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 대부분이 전업주부로서 남편에게 경제적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반영이며 구타남편인 경우 가정 내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아내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계 경제권에서 아내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상담을 통해 나타난 실태이며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경우를 고려하면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성관계

〈표9-1〉 성생활

남편중심	130(62.8%)
아내중심	3 (1.5%)
공동협력	30(14.5%)
남편의 동침거부	19 (9.1%)
남편의 변태	20 (9.7%)
기타	5 (2.4%)

〈표9-2〉 내담자가 느끼는 성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32(15.7%)
그저 그렇다	116(56.9%)
불만족한다	55 (27.5%)

(91년 면접 자료)

남편과 아내의 관계유형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성관계'인데 구타상황에 있는 부부의 성관계를 살펴보면 〈표9-1〉과 같다.

즉 남편이 성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62.8%로 가장 많으며, 남편의 변태가 9.7%, 남편의 동침거부가 9.1%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협력하는 경우는 14.5%,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내담자의 성생활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이 27.5%, 그저그렇다가 56.9%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저그렇다를 부정적인 응답으로 해석해 볼 경우 만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84.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만족한다는 15.7%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이 평소의 성생활에 있어서 아내중심의 관계(1.5%), 공동협력의 관계(14.5%)를 합친 16.0%와 거의 맞먹는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물론 이 두 경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일방적인 주도권 행사나 변태행위 등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아내구타'에 있어서 심각한 구타 후에 강제적인 혹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음을 상기할 때 아무리 부부 사이이고, 남편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원하지 않는 변태적 성행위, 남성 중심적 성관계, 남성의 일방적인 거부 등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성관계 영역에서도 부부의 공동참여와 민주적 관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구타남편의 성장배경

〈표10〉 구타남편의 성장배경

구타가정에서 자란 사람	134(33.8%)
청소년기 객지생활	154(38.9%)
편부모	93(23.5%)
기타	79(19.9%)

(중복응답)

아내를 구타하고 있는 남편들의 성장배경을 보면 구타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33.8%, 청소년기 객지생활이 38.9%, 편부모가 23.5%로 나타난다. 내담자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구타한 사실을 모를 경우까지 고려할 때 남편이 구타가정에서 성장한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타자는 폭력가정에서 폭력을 학습했으며 자라온 성장과정의 문제가 아내구타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아내를 구타하고 있는 남편들의 성장배경을 보면 구타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33.8%, 청소년기 객지생활이 38.9%, 편부모가 23.5%로 나타난다. 내담자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구타한 사실을 모를 경우까지 고려할 때 남편이 구타가정에서 성장한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타자는 폭력가정에서 폭력을 학습했으며 자라온 성장과정의 문제가 아내구타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3) 구타 관련 특성

1) 구타 시작 시기

〈표11〉 구타 시작 시기

결혼 전(교제기간)	93(23.5%)
결혼 후 6개월 이내	142(35.9%)
7개월~1년 이내	41(10.4%)
1년 이후	120(30.3%)

구타 발생 시기를 보면 전체 내담자의 1/3이 넘는 35.9%가 결혼 6개월 이내에 구타당하기 시작하고 결혼 전에의 구타도 23.5%에 이른다. 이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가 보장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결혼한 아내 혹은 교제중에 있는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의 표출로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결혼 초기에 발생한 구타를 막지 못 할 때 구타가 습관화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초기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2) 구타 이유

〈표12-1〉 구타남편의 구타 이유

아내의 말대꾸	224(56.5%)
살림을 잘 못해서	81(20.5%)
시부모공경을 잘 못해서	76(19.2%)
생활비를 낭비해서	46(11.6%)
자녀문제	38(9.6%)
아내외도	24(6.1%)
기타	117(29.5%)

(중복응답)

〈표12-2〉 내담자가 생각하는 구타 이유

성격난폭	233(58.8%)
남편의 열등감	211(53.3%)
의처증	151(38.1%)
주벽	122(30.8%)
경제무능력	104(26.3%)
시집식구와의 문제	76(19.2%)
남편외도	37 (9.3%)
사업실패	37 (9.3%)
아내외도	13 (3.3%)
기타	25 (6.3%)

(중복응답)

구타남편이 말하는 구타 이유로는 아내의 말대꾸 때문에 구타한다가 제일 많고(56.5%)

그 다음이 살림을 잘 못해서(20.5%), 시부모 공경을 잘 못해서(19.2%), 생활비를 낭비 해서(11.6%), 자녀문제(9.6%) 등이었다.

한편 구타당한 아내들이 생각하는 구타 이유를 보면 성격이 난폭해서(58.8%), 남편의 열등감(53.3%), 의처증(38.1%), 주변(30.8%) 등이다.

이 두 반응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구타자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혹은 가족문제 자녀문제 등 온갖 현실적인 문제 발생시에 그 원인을 아내에게 돌려 ‘폭력’의 형태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타당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개인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치유해 나가거나 대처해 나갈 수 없는 정신적 결함, 성격상의 문제이며 사회인식과 제도가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3) 구타시 내담자 태도

〈표13〉 (중복응답)

무조건 빔	106(26.8%)
맞고만 있음	171(43.2%)
대항함	165(41.6%)
도망감	118(29.8%)

구타당할 때 내담자의 태도를 보면(〈표13〉), 맞고만 있는 경우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항하는 경우 41.6%, 도망가는 경우 29.8%,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경우가 26.8%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복응답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여성들은 여러 방법으로 대처해 보지만 일단 습관화된 구타에는 어떤 방법도 효과적이지 못 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대항한다의 경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구타의 영문을 모르면서도 구타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비는 경우도 26.8%로 구타당하는 아내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타당하는 아내의 순응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남편의 폭력을 용인하게 되어 구타를 더욱 더 조장할 뿐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

4) 구타 후 태도

구타 후 남편태도를 보면 용서를 빌거나 외식이나 선물공세와 치료 등으로 사과하는 경우 5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타 후 남편의 행동을 보면 이와 같이 아내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구타 전보다도 더욱 잘해 주는 이중 성격이 있는데 이는 아내를 자신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채찍과 당근을 교대로 베풀며 아내를 폭력의 노예로 길

들이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도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타 후 오히려 더 당당해’ 지는 경우(53.8%)가 있는데 이는 구타 후 더욱 거칠어져 협박하거나 감금시켜버리고 자녀들도 구타하며, 구타 후 두려움과 통증으로 인해 꼼짝 못 하는 아내에게 난폭하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때의 상황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아내에게 남편이 폭력을 이용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요하는 행위로서 ‘아내강간’이라고 한다. 서구 일부의 경우 아내강간을 법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구타 후 아내강간 행위는 아내들로 하여금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갖게 할 만큼 큰 상처가 되며 여성의 전화 면접상담 중 35% 정도가 아내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타 후 내담자 태도에 있어서는 〈표14-2〉에서와 같이 화내다 화해하는 경우가 32.0%로 가장 많고, 이혼요구가 28.5%, 가출이 22.7%, 무반응이 20.7%, 남편에게 사과하는 경우가 10.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내다 화해하는 경우를 보면 구타 후 남편이 다시는 절대로 구타를 하지 않겠다며 빌고 사과하는 친절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 희망을 가져보는 것인데, 이렇게 구타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폭력은 끝없이 악순환된다.

무반응의 경우는 이미 남편의 구타에 의해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자포자기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오히려 구타당한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남편에게 사과하는 것인데, 더 심한 폭력이 닥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여성 스스로 구타의 책임을 젊어지려는 일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14-1〉 구타 후 남편 태도

사과함	122(30.8%)
외식이나 선물공세	41(10.3%)
치료해 줌	44(11.1%)
당당함	213(53.8%)
성관계 강요	107(27.0%)
기타	24 (6.0%)

〈표14-2〉 구타 후 내담자 태도

이혼 요구	113(28.5%)
가출(친정, 친구집)	90(22.7%)
화내다 화해	127(32.0%)
남편에게 사과	41(10.3%)
무반응	82 (20.7%)
기타	38 (9.6%)

(중복응답)

(중복응답)

5) 구타에 대한 전망 (내담자의 생각)

구타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10.6%에 불과한 반면,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란 생각은 50.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구타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다가 36.6%인데 이는 남편의 습관화된 폭력으로 인하여 구타당하는 여성은 무기력해져 벼려 판단능력이 상실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15〉 구타에 대한 전망(내담자의 생각)

좋아질 것이다	42(10.6%)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200(50.5%)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생각없음	145(26.6%)
모르겠다	30 (7.6%)

(중복응답)

6) 혼인지속 여부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

〈표16〉

혼인지속	32 (8.1%)
이혼	203(51.2%)
별거	75(18.9%)
형사처벌	21 (5.3%)
기타	40(10.1%)

〈표16〉에서 알 수 있듯이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은 혼인지속보다는 별거(18.1%) 또는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51.2%) 아주 심하게 구타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편의 형사처벌까지 원하고(5.3%) 있다.

그러나 실제 별거나 이혼을 감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구타를 당한 초기에는 이혼을 생각하지만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이혼을 실행하지 못하고, 구타가 오랜 시간 지속된 경우는 장기간 구타로 인해 무기력해진 자아능력과 독립해서 살아나갈 만한 정신적 능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이혼을 실행하지 못 한다. 결국 구타당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한다는 일부종사,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모든 사회제도의 벽을 여성 개인적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구타관계에 계속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17〉과 같다.

7) 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이유

〈표17〉

(중복응답)

그래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	15 (3.9%)
남편이 구타버릇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92(23.2%)
아이들 때문	266(67.2%)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	89(22.5%)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두렵기 때문	82(20.7%)
기타	16 (4.1%)

〈표17〉에 나타난 것을 보면,

구타당하는 여성들 스스로가 남편의 구타가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 스스로가 구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때문(67.2%)이라는 응답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20.5%), 이혼을 하고 혼자 살 경우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두렵기 때문이며(20.7%), 친정이나 시집식구 등 주위사람들도 만류하기 때문(기타 4.1%)이다.

이렇게 볼 때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자신의 처지나 요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식이나 주위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혹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워서 온갖 폭행을 혼자 견디며 참고 살고 있는 상황이다. 즉 가부장적 가족관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현모양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 경제적인 예속, 구타상황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는 여성에게는 뭔가 문제 있는 여성으로 낙인찍는 사회적인 인식들이 구타당하는 여성들을 구타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8) 여성의 전화에 대한 내담자들의 요구

매맞는 아내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표18〉에서 살펴보자.

이들 중 47.1%가 정신적 치료(상담) 및 물질적·재정적 지원(피난처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난처에서 쉬면서 상담을 통한 격려와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친정이나 친구집에 일시적으로 피한다 해도 남편이 찾아내어 더욱 난폭하게 구타하

는 상황이 생길 것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남편이 친정이나 친구를 협박하며 괴롭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다.

내담자들이 요구하는 피난처는 남편의 손길을 벗어나서 병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며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의 전화가 운영하는 쉼터는 11명 정도밖에 머무를 수 없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구타당하는 아내 모두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도적인 어떤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8〉

정신적 치료 (상담)	6 (6.9%)
물질적·재정적 지원 (피난처 제공)	35 (40.2%)
이혼에 관한 법률적 정보제공, 협조	36 (41.3%)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 지원	5 (5.7%)
기타	5 (5.7%)

(91. 10~12월 면접 자료)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구타’ 문제는 발생 정도 및 피해상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아내구타는 특정한 문제를 가진 여성이나 특별히 재수가 없는 여성들만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는 보편적 여성문제인 것이다. ‘아내구타’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폭행을 학습한 남편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경제제도 속에서 구조적으로 유지·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전화에서는 그동안 구타당하는 여성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원조하는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미 모든 법적·사회경제적 제도가 남성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성차별적 인식과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구타남편을 통제하고 그 아내를 지지하려는 노력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아내구타가 근절되기 위하여는 구타남편을 처벌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며, 매맞는 아내가 어쩔수없이 구타관계를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계유지가 지나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 혹은 노동시장 내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구타’를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보며, 구타당하는 여성이나 구타가정을 떠난 여성을 문제여성으로 취급하는 등의 사회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남편으로부터 참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폭행을 당하며 고통에 떠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여성들이 우선 그 긴박한 상황으로부터 대피하여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보고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긴급대피처인 쉼터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같은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함께 만남으로써 얼마나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

3. 아내구타의 지속요인

1) 가족제도

김주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법제도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가족제도와 아내구타

김 주 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아내구타 :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

아내구타는 자녀학대 행위와 함께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혹, 어떤 이는 아내구타를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 심지어는 아내구타 행위를 비정상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보니 집안에서나 혹은 이웃간에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도 약간의 비난을 할 뿐, 범죄인이나 반사회적 인간으로까지는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다. 그리고 구타당하는 아내들도 법적으로 정면 대응 하지 않고 이 사실을 감추거나 수치를 느끼며, 혼자서 고통을 감수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이 아내구타 행위는 오랫동안 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었다.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는 불법적인 폭력행위이다. 아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뿐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또 다른 폭력을 용인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폭력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구타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며 이를 방관해 왔음은 실로 놀랄 일이 다.

국내외의 가족연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내구타 행위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생활 정도를 통틀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1983년 '여성의 전화'가 실시한 조사는 '아내구타'를 사회문제화시킨 계기였는데 당시 응답자의 42.2%가 결혼 이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일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믿기지 않는 높은 비율이다. 9년이 지난 지금에도 구타당하는 아내의 비율이 결코 낮아지고 있지 않음이 그간의 전화상담 통계 및 사례조사 등에 나타나고 있다. 외국에서도 아내구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연구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매맞는 아내의 피난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내구타는 손으로 아무데나 때리거나 뺨때리기, 발길질하기, 기물을 사용하는 구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타당하는 아내는 물론이고 구타하는 남편의 인격까지 파괴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발적으로 구타를 하기도 하나, 많은 경우가 습관성이며 다분히 의도적이거나 치밀한 계획 아래 구타하는 등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반가정적이며 명백한 폭력범죄로 취급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내구타는 인간의 폭력성이 가장 비폭력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폭력과는 가장 멀 것으로 기대되는 긴밀한 부부관계에서 폭력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내구타에 그치지 않고 자녀폭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폭력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용인되거나 은폐되거나 호도되고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아내구타를 부부관계의 부적응 차원으로 치부하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구타와 폭행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반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간의 보고서에 의하면 구타 후에 남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이 사실이 매맞는 아내들을 극도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일종의 성폭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의 가장 빈번한 형태인 셈이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내구타가 용인될 경우, 그간의 보고서들이 증명하듯이 자녀들은 폭력을 학습하게 되어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게 될 것이고, 부부관계의 미명하에 성폭력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내용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파괴시킬 것이다. 결국 가정은 폭력의 진원지가 되며 동시에 희생물이 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아내구타에 대한 접근

아내구타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인에게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한마디로 부부관계를 맷고 있는 두 사람 중 남성의 일방적 폭력 행사이는데 도대체 인간의 폭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폭력의 원천은 인간의 생물적·동물적 기반에서 찾기도 하며 좌절 — 공격이론으로, 혹은 학습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폭력행위도 여기서 언급한 원천 중의 한 가지 원인, 혹은 이들의 복합에 의한 것으로 개략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왜 인간의 동물적 본성이 굳이

아내를 향해 분출되고 있는가? 왜 좌절상태는 반복되며 그리고 좌절당한 후의 공격목표가 아내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아내구타와 반대되는 평화스러운 부부관계 방법은 왜 학습하지 못하고 있는가 등등의 의문이 남게 된다. 그리하여 가정폭력을 낳는 원인을 구타자 개인적 원인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찾아보게 된다.

아내구타의 원인은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및 사회가 조직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 즉, 공격성이 강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좌절을 참지 못 하며 정신질환을 나타내는 등 개인의 인성을 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사회 내에서의 행동은 규범을 포함하는 문화적 요인으로서 남성다운 강함을 나타낸다거나 가족이 다른 가족원을 폐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 기반하여 아내구타의 원인을 찾는다. 또한 가족의 조직구성을 중요시하여 고립된 혼가족 속에서 구타를 막거나 방지할 성인이 없다는 점 등을 또 하나의 아내구타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내구타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개 구타하는 남편의 개인적 인성을 주원인으로 보거나 사회·심리적 모델로 설명하기도 하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문화적 설명방법 등으로 가정폭력을 설명하고 있다. 가정 내의 상호작용 패턴이 폭력을 부르고 스트레스 생성과 해소방법이 아내구타를 유발하며 부부간의 힘의 역학관계, 혹은 부부의 자원상태가 아내구타를 일으키는 요인임을 설명하는 ‘아내구타에 관한 이론’들을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각각 다른 접근방법이나 혹은 아내구타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검토하다 보면 이들은 가족제도 내지 가족생활 방법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거시적 혹은 미시적 접근의 양자에서 아내구타는 그것이 발생하는 가족자체와 연관된다. 한 개인의 인성 형성의 주요기반이 가족인 점, 아내구타 행위가 자녀에 의해 학습·재생산된다는 점, 가족의 구성 내지 부부관계의 성격 등이 아내구타를 촉발시킨다는 점 등 가족집단은 결과적으로 아내구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집단은 사회구조의 반영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내구타의 원인을 가족집단 내부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3. 아내구타와 가족제도

불행하게도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때리고 맞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문화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사회생활의 영역, 예컨대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나 사회 선·후배 사이

에서나 군대의 상하관계에서 구타행위는 어느 정도 용인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집단 내의 구타나 이른바 폭력행위는 사랑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덕목이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내구타도 이러한 가족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폭력이나 구타를 허용하는 이러한 가족문화는 바로 우리의 가부장제 가족 내지 사회구조의 반영으로 보아야 하며 만연되고 있는 군사문화도 여기에 일조를 한다고 보겠다. 먼저,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가부장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가족성원들의 노동을 조직·관掌한다. 남성인 가부장은 아내와 자녀 위에 군림하며 아내는 가부장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다. 서양 고대 가족에서 가부장이 생사여탈권을 가졌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계·부권제의 우리 가족은 가족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주의는 철저히 가부장 내지 남자 중심의 가족생활을 강요한다. 가족원 개개인은 가족집단을 위해 희생될 수 있으며 오로지 가족집단의 번영이 목표가 된다. 이때의 가족집단이 부계혈통을 잊고 있음은 물론이며 여성에게는 순종과 희생의 미덕만이 요구된다.

우리 전통가족에서 여성의 지위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아내구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계급사회, 남성 위주의 가족제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이 그 형태와 크기 및 기능이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부계 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므로 현대적인 남편의 아내구타에 대한 합리화도 그 원인이 가족주의 의식과 가부장의 권위로 귀속된다. 즉, 외형적으로는 부부 중심의 혁가족으로서 민주적 가족관계를 지닌 듯이 보이지만, 가족 내에서 남녀의 평등이나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며 남편에게는 아내나 가족을 소유하고 일방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는 가부장의 특권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흔히 대등한 위치에서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도 혼인한 후에는 남편이 권위적으로 변하여 자기 뜻에 맞지 않을 경우 예사로 아내를 구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가부장제 가족의 잔재인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혼인식을 하기 전 약혼단계나 정혼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인관계나 혼인관계를, 곧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를 허용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혼인이나 가족에 대한 관념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가부장제 가족의 부정적 측면을 남성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구타는 대개 은밀한 상태로 일어나지만 때로는 이웃에서 알게 되더라도 방관한다. 그 이유가 다른 부부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기보다는 남의집 남편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형태를 떤다. 심지어 길에서 자기 부인을 구타하는 남편이 있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일반인들이 비슷한 행위를 할 경우 사건화되고 법의 제재

를 받게 되지만 단지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가장의 우월적 권위가 인정되어 남편의 폭력이 묵인되는 것이다. 남편의 폭력에 대해 사회는 관용적이고 법은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는 가부장 내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한 형태인 셈이다. 오늘날까지 가부장제 가족이 존속하는가, 그리고 가장의 권위가 이토록 강하게 남아 있는가를 반문하겠지만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된 듯하면서도 가족주의적 가족관념과 가장권 의식이 잔존해 있고, 이들이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한 형태가 아내구타라고 볼 수 있다.

현대가족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혁가족 내에서도 아내구타는 많이 일어난다. 물론 혁가족 내의 생활에는 아직도 가부장의 권위의식과 전통적 가족생활 양식이 남아 있고, 이에 기반한 남녀 불평등관계와 여성비하가 존속하며 아내구타에까지 연결될 소지는 있다. 그뿐 아니라 혁가족은 그 구성과 성격상 부부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아내구타를 유발할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혁가족의 전형은 애정에 기반한 자유스런 배우자 선택, 결혼 후 부모가족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를 가지는 것, 부부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 등이다. 그리고 혁가족 내의 부부역할로서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과 부인의 표현적 역할로의 성역할 분담이 현재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다. 이러한 혁가족의 이념형은 현대 산업사회에의 적합성을 지니면서도 그 자체로서 부부갈등과 아내학대의 구조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혁가족은 애정에 기반한 혼인을 그 전형으로 하는 바, 애정이 지속되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금이 가고 증오로 변질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더구나 혁가족이 외부와 차단된 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발생될 폭력사태를 견제할 또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고 저지할 인적 자원도 이웃에 없다.

혁가족 내의 부부역할 분담에 관한 고정관념은 매우 기능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가정폭력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혁가족에서 남편은 도구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는데 이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때 부인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대등한 부부관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반면 남편이 수입이 적고 도구적 역할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 할 때 남편은 가족을 지배하기 위한 자원이 불충분하게 되고 이때 마지막 보루로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가족 내 폭력을 설명하는 자원이론은 산업사회의 혁가족 내에서 남편이 교육, 직업, 수입이 약할 때에도 가족을 지배하고 싶을 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혁가족 내에의 부인은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자녀를 낳아 기르며 집 안을 가꾸는 일을 전담하며, 가족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기대된다. 그들이 받은 전문교육은 사회생활 경력으로 활용되지 못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부인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심리적·육체적 부담 때문이다. 여하튼 현대 핵가족에는 여성해방의 가능성 이 열려 있으면서도 여성들이 전혀 해방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은 여성들 지속적으로 좌절과 갈등 속에 빠뜨린다. 이와 같이 핵가족이 외형적으로 민주적이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듯하다. 남편은 수입을 위한 도구로, 부인에게는 경제적 의존과 구속을 강요하게 됨으로써 전통가족에서와는 다른 부부갈등 관계를 불러일으킨다. 구타당하는 아내가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 하는 것은 바로 여성들 표현적 역할에 제한시키는 핵가족 내 남녀 성역할의 고착화에서 빚어지는 비극이다.

4. 구타없는 가정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구타행위는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인이 남편을 구타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율도 극히 낮고 정도도 덜 심각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

아내구타는 왜 근절되지 않는가?

구타당하면서 계속 결혼생활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가정폭력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심각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부모에게서 학대받았던 여성들이 구타를 감내하며,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독립이 어려울 때 참게 되며 남편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성들은 구타를 당하면서도 혼인생활을 계속한다. 그간의 통계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구타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빈번해지며 남편 태도에 변화가 오기는 힘들다. 생활여건이 향상되거나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폭력남편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더욱 조심하고 남편의 기분에 따라준다고 해서 폭력남편의 구타가 감소되지도 않는다. 많은 경우 아내구타가 아내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기보다는 남편의 개인적인 인성이나 가족의 성격 및 폭력문화 때문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1) 아내구타가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내구타 중단 및 예방'을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성격 및 행동교정을 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2) 가정과 지역사회가 개방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핵가족의 고립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가족들끼리 공동과제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지역사회의 공동

활동을 개발하여 참여하는 등 사회 제조직의 노력이 요구된다. 소공동체 운동에 가족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 (3) 가족집단이 더 이상 계급 재생산의 도구로 역할을 한다거나 사회통제의 단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쟁사회의 최전선에 있는 집단으로서 성원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거나 사회적 모순에 바람막이로 가족을 위치설정하는 한, 가족 성원간의 구타, 폭력은 근절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다. 구타없는 가족을 원한다면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 (4) 아내구타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새로운 가정 모델을 개발·건설하는 일이다. 가족형태가 여하하든지 간에 부부간의 권위가 동등하고 쌍방의 지원과 그 활용이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면, 그리하여 남녀평등 이념이 관철되고 생산과 재생산에의 부부의 공동 참여가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면 폭력의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회박해진다. 한마디로 기존의 남녀 역할 모델을 거부하고 '대등한 가족'을 건설하는 것이다.

아내구타 행위는 남성의 여성지배의 수단이자 그의 표현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근원이 여성학적 개념의 가부장제로 소급된다. 즉,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가 아내구타 행위를 야기하고 영속시킨다.

앞에서 제기한 '대등한 가족' 건설은 실로 여성의 참다운 해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아내구타의 지속요인

법제도 측면에서 본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소들

김 일 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흔히 부부싸움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하여 폭행이나 상해로까지 치닫는 경향이 있다. 아내구타는 그것이 형법적으로 폭행이 되든 상해가 되든 그 범죄학적 특성으로는 1인의 가해자와 1인의 피해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범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른 바 관계범죄(Beziehungsdelikt)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관계범죄 중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아내구타에서도 최소한 1인의 가해자와 1인의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선행하는 복잡한 사회적 생활관계가 이러한 범죄발생과 그 전개과정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범죄행위는 상호간에서 주고받는 작은, 지속적인 불화와 갈등에서 폭발된 최종적인 가해행위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이 그 과정 및 진행단계에서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로서 역할을 주고받는다는 사실과 그 점이 적어도 양형에서 이 긴밀한 관계범죄의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특성이 된다.

아내구타에 관한 법적·사회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그 밖에 사법관행에서도 아내구타는 가정 내의 사소한 분쟁이라는 선(先)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비교적 사회적 위험성이 덜한 범죄로 취급되기 쉽다. 예컨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의 채찍과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를 형사학적으로 확연히 구별하기란 그다지 쉽지 않듯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내구타의 경우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범죄의사를 지닌 폭행·협박이나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징계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스웨덴은 1979년 3월 23일 법률로 부모의 징계권 일체를 금지시키는 획기적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독일에서도 가족법상 부모의 양육권에서 체벌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

나 부모의 체벌권이 자녀 학대의 안전판으로 사용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교육적 환경이 취약한 서민가정에서 성미 급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함으로써 벌이는 조그만 가정싸움에 형법이 상해죄·폭행죄의 처벌을 들고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형법의 보충성의 요구에 반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성미 급한 남편이 아내에게 구타를 가함으로써 벌이는 조그만 가정싸움에 형법이 일일이 상해죄·폭행죄의 처벌을 들고 개입하는 것이 전통적인 법치국가 형법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통념화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했을 뿐 아니라, 우리 헌법 36조 1항도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문제에 관한 국가적 관심은 사회국가적 가치관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법치국가적 가치관의 차원에서 되도록 가정문제에 대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방임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종전의 태도로부터 일정한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 아내구타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새로운 법적·사회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정 내의 아내구타 문제를 국가에 의한 자유와 평등의 확보라는 사회국가적 관점으로부터 다시 조명해 보고 그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형사법적 요인들

아내구타가 심각한 범죄적 상황에 이른 경우에도 그것이 범죄로서 형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른바 암수범죄로서, 공식적인 범죄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채 사회적으로 은폐되는 중요한 원인은 아내구타의 경우 사소한 부부싸움의 차원에 속하는 가정 내 사건이나 아니면 이 차원을 벗어나 아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나 평안을 위협하는 범죄사건이나를 구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준이나 실무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여성의 전화' 상담자들이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가들의 견해는 구타당하는 여성들이 단순히 구타하는 남편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형사법적 관행의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가정 내 사건 불간섭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인

예전대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상담을 반다가 남편이 흥기를 들고 위협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을 불러도 가정일이라며 그냥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 남편을 고소까지 했는데 부부간에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훈방시켜 주었다는 사례의 보고도 있다. 이처럼 가정 내 사건의 불간섭주의가 아내구타 문제를 은폐·조장시키고 있고, 아내구타 문제를 각 가정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고유한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구타의 피해자들은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방치되어 가정은 결국 숨겨진 범죄장소·범죄온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아내구타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프라이버시로서 제3자, 특히 경찰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통념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자라난 악경국가 이념에 걸맞는 것이다. 경찰은 집 밖에서 악경이나 봄주면 죽한 것이고 집 안의 일에까지 개입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는다는 사고이다. 이러한 초기 악경국가 이념의 확립 때까지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명의 발달사는 오랫동안 여성을 제2등급 인간으로 취급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명화는 여성을 가족에 떨린 노비, 단순한 출산도구, 남성적 육욕의 노리개감으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리와 오지리, 스위스,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권을 인정해 왔으며, 그 결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징계권까지 인정되었던 혼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초달을 하듯 아내의 종아리를 쳤던 것이다.

범죄 피해자로서의 여성은 그것이 성범죄의 피해자이든 상해와 폭행범죄의 피해자이든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1대1의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2중의 피해를 입는 범죄 피해자라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아직 인류의 문명사가 여성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통한 양성의 동등에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한국여성에게만 특유한 현상이 아니다. 여러 문명권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여성해방운동이 일정한 수준과 성과를 누리고 있는 서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성은 범죄 피해의 본래의 뜻을 넘어가는 또 다른 초과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운명에 시달리고 있다.

아내구타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

이처럼 여성에 대해 양성의 평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하고 가정을 제도로서 보호하자면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 국가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아내구타의

문제가 범죄라는 인식에 도달하자면 종래의 범죄관으로부터 벗어나 범죄개념 자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종래 범죄는 규범 침해 내지 사회유해적 법익 침해로만 이해되었고 여기에서는 형법규범과 범인 사이의 관계가 중심내용이었다. 범죄란 국가에서 제정한 법규범의 침해이며 이 침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침해자를 억압할 목적으로 과해지는 형벌수단에의 의존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범죄관 및 형벌대응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범죄 피해자의 중립화요,²⁾ 범죄인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치국가적 배려이다. 범죄 피해자의 지위 약화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사사로운 대응으로부터 절대국가의 형성 후 형벌권의 국가독점화현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독점화과정에서 국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범죄에 대한 사사로운 대응을 완전히 차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범죄에 대한 피해자로 자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 인식으로부터의 전환이 최근 들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즉 법익과 규범 침해로서의 범죄관에 대해 법적 평화 회복의 실효성 있는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범죄를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침해로 파악하려는 견해의 대두가 그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의 파괴 내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특히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이러한 범죄관에서는 갈등문제의 해결 내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회복을 위해 국가의 개입도 전통적인 형벌이나 보완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방법들은 심한 성격장애나 또는 성적 충동장애로 계속적·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회치료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의료적·심리치료적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돋는 제도라든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가해자가 변상해 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회복되도록 조치하는 이른바 원상회복제도(victim restoration), 일정 기간 공공시설이나 사회봉사기관에서 선한 일에 노력봉사하게 함으로써 죄값을 치루게 하는 봉사명령제도(community service) 등이 있다. 이같은 제도들은 아내구타와 같은 가정 내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가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되 종전과 같은 범죄인 낙인을 찍어 전과자가 되게 하는 대신, 가해자 스스로 속죄와 거듭남의 길을 걸어가도록 치료하고 원조하는 완화된 형사적 조치들이어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구타남편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가 검토·강구되어야

가정 내 아내구타 문제에 접근할 때 가해자를 전통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때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다. 오히려 아내구타 문제를, 전통적인 범죄보다는 치료받아야 할 성격장애나 태도불안정과 같은 심리적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구타하는 남편을 선불리 범죄인으로 낙인찍는 범죄인화 과정으로 몰고 가지 말고, 보통의 경우 심리적 교정을 받아야 할 환자 정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의사와 간호사 역할은 그래도 배우자와 가족이라는 시각에서 아내구타 문제에 대한 해결도 접근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구타하는 남편을 범죄인으로 낙인찍음으로써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한, 문제는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환자라는 시각에서 적극적인 국가와 사회단체의 개입과 구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때, 매맞는 아내들도 상황을 체념하여 폭행의 노예 상태에 빠지는 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선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내구타는 오늘날 우리사회처럼 전통윤리가 해체되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점차 확산되어 가는 과도기 시기에 급격히 증대할 소지가 많다. 그러나 아내구타가 최근에 이르러 절대량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조정하고 진정시켜 나갈 수 있었던 가족 내의 전통적인 윤리관이나 일체감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숨겨진 비율이 노출되는 비율로 급격히 이전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참작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임은 틀림없다. 이 사회적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로 의식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로서 주어진 가정과 혼인은 사회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최악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체하게 하거나 방기하도록 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피해상황에서 일시 벗어난 후, 냉정을 회복한 뒤 다시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부서진 가정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부부의 공동노력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아내구타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사법적·형사법적 해결에 호소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양성의 인격적 동등성이 깨어지고, 한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이 짓밟힌 지속적인 한계상황에서만 그 유일의 탈출수단으로서 민사법적·형사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인내에 인내를 가지고서 사회적인 배려와 구호대책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3. 법적 대응책

가정 내 아내구타 문제를 해결하자면 처벌과 진압보다는 예방에 중점이 놓여져야 한다.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에서도, 진화에 앞서 인명구호가 최우선 과제이듯 아내구타 문제에 있어서도 구타자의 처벌과 진압에 앞서 가정과 부부관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형법은 형사정책의 최후수단이요,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후수단이라는 명제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정책이 최우선의 해결책이요, 그 다음이 형사정책, 맨 마지막이 형법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사회정책 : 부부갈등의 상담치료적 조치

사회정책은 사회보장법의 관심대상이다. '여성의 전화'에서 개선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가정 복귀를 위한 교육시설, 쉼터, 단기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동교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보장 차원의 전담기구와 시설의 설치·확충은 아내구타 문제의 해결에서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개선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성격이나 심리치료 상담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다. 심리적 일탈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할 때 심리적 불안정은 자칫 정신병질로 취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사랑과 신뢰의 터 위에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과 구타가 일상화되었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부부 모두가 피해자요 가해자라는 관계범죄적 시각에서 먼저 부부의 성격갈등과 심리적 억압과 왜곡을 풀어주는 상담치료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의료보험의 혜택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한 치료비용에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물론이다.

형법적 대응은 최후수단 : 아내구타 문제는 별도의 구성요건 설정해야

그 다음으로 형사정책적 차원의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아야겠다. 현행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중상해죄, 특수폭행의 죄 등이 규정되어 있고, 특히 아내구타와 밀접하게 연관된 폭행의 죄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 구류, 과료와 같은 형벌의 종류가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상습 폭행·상해, 제3조가 흥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상해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가정 내 폭력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아내구타 문제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의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법정형을 상향조절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형사제재의 종류도 징역, 벌금, 구류, 과료 외에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피해자 원상회복제도라든가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 그 밖에도 사회치료교정처분의 도입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지 중하지 않은 상해사건이나 폭행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일정한 심리상담치료소의 수감명령이나 선행보증부 기소유예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으면 일단 경찰관이 개입하여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구타 피해여성 문제 전담부를 각 경찰서별로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여성의 전화'에서 제안한 바 있는,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시킬 수 있는 강제치료 진단처분이나 일정 기간 가택 출입금지 처분은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친 판사의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도 구금되는 구금시설이 아닌 다른 사회적 치료·보호시설에서 출입금지 기간 동안 체류케 하는 시설 등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보안처분법에 의한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형벌 아닌 보안처분의 하나로 개선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형벌 및 형사제재와 같은 전통적인 형사제재는 이미 가정의 유지가 무의미해진 최악의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고려된다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아내구타 사건의 심리는 처벌 위주 아닌 신뢰 회복에 중점 두어야

문제는 이러한 아내구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특별법과 같은 특별법률의 규율 속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해답은 반쯤은 일리있고 반쯤은 일리없다는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아내구타가 특별히 성적 충동장애나 도착된 성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혼존할 때 그러한 아내구타는 성폭력 특별법의 규율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내구타 문제까지 특별법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일정한 아내구타를 행위자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성적 충동장애나 아니냐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가적 인력의 확보는 현재 상태에서 그리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법적 규율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도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을 때에는 사회국가

적 관점에서 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구체적인 형법상의 제도를 고치기 전에 현행 제도를 가지고서도 운용의 묘를 살리고 피해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내구타 문제가 형법적인 무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중대한 아내구타 사건의 심리에서도 형사사법은 처벌 위주보다 가정과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부부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 일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절차로 사건을 심리하지 말고, 오히려 가정법원에서 가사심판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조정과정을 거치듯 원탁의 법정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자리를 하고 법관과 검찰, 변호인, 사회적 봉사기관 종사자나 저명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대화와 의사소통으로 가해자의 죄책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고 그의 개성에 맞는 처우를 선택해 가는 특별예방 위주의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실무 관행의 개선과 정착이 요청된다. 아내구타에 대한 고소가 가정의 파괴수단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의 단계가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맷음말

아내구타가 심각한 사회문제에까지 이른 것은 현대사회로 변모해 가는 오늘의 우리들 공동체 삶에서 남의 가정의 행복에 대한 각자의 무관심과 국가의 사회정책적·법정책적 무관심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해도 헌법질서를 비롯한 법질서에서 보는 사회의 기본질서의 틀은 고립된 개인을 전제한 극단적 개인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과 개인이 더불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충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격적 연대주의이다. 인격적 연대주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의 일에 관심과 연민을 갖는다. 남의 행복한 삶 없이 나의 행복한 사회 공동체적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내구타가 일상화된 가정은 드디어 결손가정으로 전락하고 그곳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은 삶의 의욕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잃은 채, 비행청소년 내지 범죄청소년으로 이전한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의 자녀와 더불어 생활하며 나의 자녀들의 생활영역에서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내구타 문제가 남의 집 불보듯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내구타 문제에 관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활동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제는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

인들은 법제도 분야에서 제도 자체의 미비에 기인한다기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제도조차 사회국가적 이념과 관심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는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내구타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는 시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선입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적 제3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토의와 대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 9년 동안 이 문제에 기여해 온 봉사의 의미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귀한 것이다.

4. 아내구타 대책

인간파괴로부터의 피난처

이화수 (아주대 정외과 교수)

1) 형법의 보충성

형법이 다른 모든 수단에 비해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법의 결손성이라고도 얘기한다.

2) 범죄 피해자의 중립화

국가가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가해자와 문제해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간파괴로부터의 피난처

이 화 수 (아주대학교 정외과 교수)

서언

‘여성의 전화’가 존재한다는 것, ‘여성의 전화’가 9년 동안 성장하였다는 것, 위기상황의 관리를 위한 「쉼터」를 5년간이나 운영해 왔다는 것은 지구촌이 병들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 하고, 우리의 가정이 학대와 폭력의 장이 되었다는 예증이다.

그동안 ‘여성의 전화’는 규모나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발전하였을 뿐 아니라 도움을 받은 내담자들의 숫자인 면도 상당히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말은 가정 안의 폭력이나 성폭력의 사례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리라는 분석과 추리는 가능하지만, 통계숫자의 증가가 실제적 증가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여성의 전화’가 하는 일이 알려지고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그동안 문제로 삼지 않던 일을 재점화하게 되었고, 팔자소관으로 생각하면서 학대를 참고 살던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권의 침해’라는 각성과 인식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가정 내의 부끄러운 치부로 생각하며 비밀로 삼았던 가정 내의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구타행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제3자의 도움을 찾아나서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전화’는 전화상담, 면접상담 및 쉼터 운영을 통하여 가정 내의 인권유린 및 비인간화의 과정에 강한 쇄기를 박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 인간화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과제를 너무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확대되고 봉사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가정 내의 폭력과 아내구타로 인한 학대와 비인간적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자행되고 있으며, 구원해달라는 희생자들의 울부짖

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다.

'사적인 것'이라고 사회가 무시하고 경시해 왔던, 가정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비인간화의 사건들이 아내구타와 학대라고 볼 수 있다. 사랑한다는 사람들간에 일어나는 증오와 폭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적·제도적 민주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사적인 장소에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할 수도 없다. 근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적·국가적 지원을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피난처(Shelter)란?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학대받는 아내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임시로 안전하게 기거하는 곳을 영어로 Shelter라고 한다. Shelter라는 말은 '피난처', '온신처', '보호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난이나 위협,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을 피하여 숨어 있는 곳" 혹은 "위협이나 폭행,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는 곳"이란 뜻을 갖는다. '여성의 전화'가 운영하는 「쉼터」는 휴양하러 온 휴가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학대와 구박 및 물리적 폭행을 피해서 온 사람들을 위한 응급환자실이다.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학대받고 구타당하는 아내들은 육체적으로 골병이 들고 상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율성과 자신감, 판단력 등을 포함한 사람다움의 인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속히 안전지대로 옮겨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마치 전쟁 때 적진의 포로가 되어 계속적으로 고문당한 병사들과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그 모멸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증오와 불안, 좌절 및 긴장 등 말할 수 없는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거의 다 상실한 상태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정상적이고 안전한 자리로 옮겨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의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판단능력, 결정능력, 관리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생긴 것이 Shelter이다.

세계의 많은 곳에 존재해 왔으며, 존재하고 있는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

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총체적인, 대담하고 긴급하며 비상한 혁신적인 변혁을 요구한다. … 어떤 제도가 공동의 선을 촉진하는 것보다 일부 특권을 우선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 부정의에 대하여 항의할 뿐 아니라 그 악의 제도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한다."

이는 제도화된 폭력에 대하여 항거하였던 콜롬비아 「메데진 회의 성명서」(1968)의 문구이다.

우리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구석구석에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편만해 있다. 총체적이고 과감한 변혁을 필요로 한다.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강자의 횡포로 인한 억압의 구조와 장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약자가 그 억압구조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도망도 칠 수 없는 상황에 살게 된다면, 이는 마치 세기 전 미국 남부 주의 흑인 노예들과 마찬가지이다. 노예해방전쟁으로 자유화된 것이 130여 년이 지난 오늘 20세기의 종반에 공공연히 서울의 지붕 밑에 노예화된 약한 아내들, 여성들이 있고 이들을 구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회적·문화적인 용인하에 자행되는 남성의 횡포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피신시키며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Shelter는 인간회복을 위한 조그만 장이다.

2. 현대사회와 피난처

산업화와 후기산업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의 상황은 인간성 상실의 장이 되고 있다. 소속감을 상실하고 공동체의식이나 유대감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거창한 현대의 도시는 소외된 개인들이 관계없이 운집해 사는 맘모스 대중사회로 변형되었으며 자아를 상실한 규범 없는 사회, 정신적 공백상태,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아노미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수록, 인간의 정서와 따뜻한 인간다움은 사라져 가고 정신분열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필자가 1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 시에서 열린 '구타당한 여성'에 대한 회의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그때 수백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구타당한 아내'로서 남편에게서 탈출한 여성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증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중 한 여성은 스위스 여성이었는데, 결혼한 이후 여러 해 동안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구타당하면서 살았으나 탈출하지 못하다가 몇 년 전

에 미국(뉴욕)으로 이민을 왔다고 하였다. 결국 계속되는 학대를 벗어나 어떤 친구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렇게도 아름다운 스위스 같은 나라에도 아내를 때리는 병든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내구타나 여성(약자) 학대는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병든 중후군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로스엔젤레스에서의 경험으로, 수많은 동양민족들 중에서 아내구타의 빈도수와 심각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임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보수적인 가부장적 전통과 전쟁을 겪으면서 폭력적 문화를 강화시켰고 성미가 급하다는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저변에 깔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한국동란 이후 우리의 가족구조를 위시한 사회 안의 하부구조들이 붕괴되고 갑작스런 도시화와 정치적 변동,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진척된 산업화와 더불어 촉진된 사회변동은 그 자체가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치열한 경쟁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인성의 대량산출이 오늘과 같은 폭력현상을 낳게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전화' 「쉼터」 이용자 분석에 따르면 26세부터 35세까지가 72%이고, 구타는 결혼 후 초기의 현상이며 사회변화의 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도 무관심하다는 느낌이다.

1970년대 말에 이미 샌프란시스코에는 20여 개, 로스엔젤레스에는 30여 개의 Shelter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그리고 유럽 각국에도 성폭행이나 구타당한 여성들을 돋는 여성센터나 보호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희생된 약자들을 위하여 정부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서둘러 취하였다. 미국의 오래된 주와 같은 보수적인 주법에 의하여도 이미 70년대에 부부간의 강간도 불법화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80년대 초에 이미 가정 내의 폭력도 형사법으로 다루었다. 예컨대 이웃이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에 남편이 아내를 때린 혼적이 분명할 때에는 아내나 가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폭력범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

민주화, 자유화, 인권보호의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점증하고 있는 가정 내의 폭력을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약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가정 안에서의 학대와 폭행은 결국 사회의 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사전일 수 밖에 없다. 매맞고, 구박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의 폭행자가 되고 아내구타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전화' 자료에 의하면 38%의 가능성이 있고, 김광일 보고서에는 70%로 조사되어 있다.)

가정은 자녀교육에 가장 기초적이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의 장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의 부모, 그리고 부모간의 관계형태는 자녀들의 마음으로 이식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가정 내의 폭력은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에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가정 내의 인권유린이 사회에로 연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병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저지르는 행위가 다시 사회로 환류되고 상호간에 순환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에 개입하여 이를 차단하고 희생자를 치유해야 한다. Shelter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주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희생자가 당장 위기를 피하고 정상적 삶을 회복하도록 도움 줄 수 있는 인간화의 장이 되는 것이다.

3. 피난처로서의 쉼터

'쉼터'란 참으로 낭만적이고 여유에 넘치는 이름이다. 신록이 우거진 속에 샘물이 솟는 그늘에 앉아 뜨거운 햇볕을 피하여 땀을 식히고 물 한바가지 마시고 면나가는 나그네의 쉼터인 양 자못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러나 이 쉼터의 내용은 너무나 다르다. 늦대 같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올 시간이 되면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곤 한다는 아내들에게는 우선 벌을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곳이요, 두려움이 없이 쉴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쉼터이긴 하지만, 희생당한 아내들에게 위기와 무자비로부터 피신하는 절박한 은신처임이 틀림없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현장이요, 억울함과 분노를 달래는 곳이요, 깨어지고 무너진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 잡는 곳이요, 육체적·정신적 아픔에 눈물흘리고 서러워 목메이는 통곡의 장이다. 이곳은 쉼터가 아니요, 아픔이 쑤시게 짓아드는 응급치료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치유하는 응급실로서의 「쉼터」의 규모와 능력은 너무도 빈약하다. "단독빌라 방2, 거실, 부엌, 화장실, 최대인원 11명"이라는 보고서의 표현으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3,4명이 거주할 정도의 작은 공간과 시설에서 10여 명이 쉬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 누워서 신음하기에도 부족한 공간이다. 진짜 피난살이를 위한 피신처일 뿐이다. 이들을 사랑으로 돋고, 맘홀려 봉사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넘치는 성의와 열기를 감안하더라도 '쉼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쉼터」가 인간회복의 장이 되기 위

하여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어떤 독지가나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로스엔젤레스의 근교 파사레나 시의 Shelter나 롱비치의 Shelter에는 한 사람이 한 방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실이나 회의실이 따로 있어 쉬면서 생각할 수 있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기를 찾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려면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의 전화'가 운영하는 「쉼터」는 10명 내지 11명 정도 수용 할 수 있는데 시설을 늘려 10명 정도를 더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란 불가능하며 다만 상징적인 실습장 정도로밖에 생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을 제정하여 피난처 시설을 많이 만들어 구타와 강간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을 돕도록 해야 한다. 시설기관들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숨겨진 문제를 파헤쳐 양성화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들을 활용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Shelter 운영비의 80%를 주정부가, 20%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프랑스 경우에도 이러한 피신처로서의 복지시설은 대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재인간화를 위한 회복의 장

Shelter는 일그러진 자신을 바로잡고 깨어진 육체를 치유하며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신감과 자율성, 판단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적합한 시설과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좋은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구타당하고 구박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결정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결단력을 얻도록 하려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필자가 로스엔젤레스에서 <한미정신건강 봉사센터>를 운영하던 때에 장기적으로 구타당한 여러 명의 여성들을 Shelter에 보내온 하였다. 특히 롱비치에 있던 피난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내기만 하면 자신감이 넘치고, 결정능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자기의 뜻대로 미래를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 놓곤 하였기 때문에 센터 모든 직원들이 감탄하면서 보람을 느끼곤 하였다.

그들은 Shelter에 입소한 여성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킨 후 본인의 결정에 따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능력을 키운 후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장기적인 학대하에 살아온 여성들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퇴화 되었기 때문에 교육 정도나 기술의 유무를 막론하고 재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쉼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직업교육을 시켜 취업알선까지 하여 독립적으로 살도록 돋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교육을 위한 장소와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므로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전화'의 자료에 의하면 남편에게 구타당한 여성들의 55.3%가 이혼을 희망하지만 현행법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협의이혼) 되어 있다. 그러나 심한 학대와 구타의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피해자인 여성의 요구하면 특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여성의 전화'가 이미 입법을 위한 자료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려 한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구타당한 아내'를 어떻게 돋느냐 하는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입법 추진 활동에 참고가 되기 바란다.

위기에 처한 여성의,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온다. 그러면 기관의 직원은 구조를 요청한 여성에게 일단 개인의 용품들을 준비한 후에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기타 안전한 장소에서 전화하라고 부탁한다. 그후 그녀가 전화하는 장소로 가서 그녀를 차에 태우고 상담소로 와서 우선 상처를 치료하고 안정할 수 있도록 상담함과 동시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의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Shelter에 보내게 되면 그날 저녁쯤에 남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내는 안전한 보호소에서 지내게 되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의 상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의 전화번호는 〇〇〇-〇〇〇〇이며 저의 이름은 〇〇〇입니다." 보통의 한국 남편(미국에 있는 교포)인 경우 2~3일이 지나야 찾아온다. 독한 남성들은 4~5일 정도 참다가 나타난다. 이 남편들은 분노하여 있거나 대단히 초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잘 대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만나게 된다.

자초지종에 대하여 묻고 진지한 상담을 권유한다. 그들은 대개 아내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묻지 만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전화연결도 할 수가 없다. 본인의 허락이 없이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미국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편을 유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누그러지면서 상담을 받게 된다.

분리된 상황에서 서로를 돋다가 남편의 상황에 따라, 또 요청에 따라 여성에게 연락하여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주선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전화를 연결시켜 주면 상당히 많은 수의 여성들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되며 머지않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꼭같이 다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

Shelter에서 완전히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면 10명 중 8,9명은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개척하게 되어 법원에 이혼을 소송함과 동시에 남편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서를 신청하게 되며, 법원은 “아내에의 접근을 불허한다.”는 법원의 명령서를 발급, 사법경관이 직접 남편에게 배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경찰의 개입을 싫어하며 이 명령에 복종하게 되므로 여성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이혼을 위해서 법정에서 한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게 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Shelter의 주소나 전화번호 및 거의 모든 정보는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Shelter의 전화번호만을 공인된 기관들이 갖고 있으며 해당직원만 알고 있을 정도로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일단 가정을 탈출하여 사회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사회적 사건이면서 제도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피난처가 많아지고 잘 운영되려면 개인과 기관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법적 보호하에 자아를 회복하고 재인간화되어 스스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Shelter의 기능이다.

결어

우리는 지금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 ‘민주주의 사회’ ‘선진사회’를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는 제6공화국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든가 온갖 물질적인 혜택을 누린다든가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노예화하고, 우리들의 삶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자율성을 박탈하고 억압한다면 도리어 인간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되는 것이다. 인간답기 위하여는 기본적 물질생활의 기초가 마련된 위에 자유로움, 자율성, 마음편안함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개개인이 가진 능력과 에너지를 발휘하고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든지 이러한 인간다움이 파괴되고 짓밟히는 곳이 있다면, 학대받고 구박받고 구타당하고 신음하면서도 호소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건설될 수 없다. 인신매매는 사회의 큰 범죄이고, 경찰의 고문은 국민의 저항을 일으키며, 도둑이나 절도는 사회기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매를 맞고 온갖 쓰라림과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여성 역시 범죄의 희생자가 아니겠는가? 가해자는 범죄자로 규정될 충분한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닌가?

법과 제도는 벌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정폭력, 아내학대, 성폭력 등을 제어하고 약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과감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인들과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화합해야 한다.

우리 이웃에서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도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록

- 1) 구타 설문지
- 2) 여성의 전화 말간 자료집 목록
- 3) 아내구타 관련 도서목록
- 4) 아내구타 관련 신문스크랩

구타 설문지

1. 남편의 성장 배경

- 1) 구타가정에서 자람 () 2) 청소년기 객지생활 () 3) 편부모 ()
4) 기타 ()

2. 구타가 시작된 시기

- 1) 결혼 전(동거 전) () 2) 결혼 후 (부터)

3. 첫 구타의 동기와 상황 (구체적으로)

4. 구타의 주기성

- 1) 주기적 () 2) 비주기적 ()

5. 주기적이라면 빈도는

- 1) 주 (회) 2) 월 (회) 3) 년 (회)

6. 구타하는 상황

- 1) 아내가 말대꾸했을 때 () 2) 남편이 술마셨을 때 ()
3) 시집식구와 문제가 있을 때 () 4) 생활비를 요구했을 때 ()
5) 남편의 외도에 의문제기 때 () 6) 기타 ()

7. 남편이 구타할 때 대는 평계

- 1) 아내의 말대꾸 () 2) 살림을 잘못한다 () 3) 시부모 공경을 잘못한다 ()
4) 아내의 외도 () 5) 자녀문제 () 6) 생활비를 낭비한다 ()
7) 기타 ()

8. 내담자가 생각하는 구타 이유(있는 대로 표시)

- 1) 남편의 열등감 () 2) 경제적 무능력 () 3) 사업의 실패 ()
4) 주변 () 5) 의처증 () 6) 성격 난폭 ()
7) 시집식구 문제 () 8) 남편의 외도 () 9) 아내의 외도 ()
10) 기타 ()

9. 구타 당할 때의 내담자의 태도

- 1) 무조건 빈다 () 2) 맞고만 있다 () 3) 대항한다 () 4) 도망간다 ()

10. 구타당한 후 내담자의 태도

- 1) 이혼 요구 () 2) 가출(친정, 친구집) () 3) 며칠 화를 내다 곧 화해한다 ()
4) 남편에게 사과한다 () 5) 무반응 () 6) 기타 ()

11. 구타 후 남편의 태도

- 1) 사과한다 () 2) 익식이나 선물공세 () 3) 치료해 준다 ()
4) 당당하다 () 5) 성관계 강요(강간) () 6) 기타 ()

12. 남편의 구타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

- 1) 참고 살면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 2)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
3) 공포감, 두려움 () 4) 두려워서 생각이 없다 () 5) 모르겠다 ()

13. 구타 양태

- 1) 손, 발로 () 2) 흥기 사용 () 3) 닥치는대로 () 4) 담배불로 지짐 ()
5) 옷 벗기고 때림 () 6) 가둬놓고 때림 7) 기타 ()

14. 다른 가족이 보는 데서 때리는가?

- 1) 예 () 2) 아니오 ()

15. 아내 외의 사람도 구타하는가?

- 1) 예 (자녀, 시집식구, 친정식구, 이웃, 남편의 친구)
2) 아니오 ()

16. 구타당하면서도 남편과 헤어지지 못 하는 이유

- 1) 그래도 남편을 좋아한다 () 2) 참고 견디면 남편이 나아질 것이다 ()
3) 아이들 때문에 () 4)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
5)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서 ()

17. 남편의 평소 성격(있는 대로 표시)

- 1) 난폭 잔인하다 () 2) 평범하다 () 3) 양순하다 ()
4) 감정적이다 () 5) 합리적이다 () 6) 이성적이다 ()
7) 폐쇄적이다 () 8) 개방적이다 () 9) 아내 외의 사람에게는 잘한다 ()

18. 현재 내담자의 희망사항

- 1) 혼인 지속 () 2) 이혼 () 3) 별거 () 4) 기타 ()

19. 이혼 또는 별거에 대한 남편의 태도

- 1) 원한다 () 2) 원하지 않는다 ()

아내구타 관련 목록

한국여성의전화 발간 자료집 목록

1. 자료집

- | | |
|---|----------|
| 1) 여성의 전화 개원기념 자료집 | 1983. 3. |
| 2) 개원 1주년 기념 보고서 | 1984. 6. |
| 3) 상담원 사례집 1(비매품) | 1985. 6. |
| 4) 개원 2주년 사례연구 보고서 | 1985. 6. |
| 5) 인신매매와 매춘여성 | 1985. 6. |
| 6)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 활동보고서 | 1985. 7. |
| 7) 상담원 사례집2(비매품) | 1986. 6. |
| 8) 빙곤과 자살 공개 토론회 보고서 | 1986. 6. |
| 9) 개원 4주년 기념 보고서
— 남녀 결합의 불평등 구조 | 1987. 6. |
| 10) 상담원 사례집3(비매품) | 1987. 6. |
| 11) 성폭력 자료집 | 1987. 6. |
| 12) 개원 5주년 기념 여성상담 사례집 | 1988. 6. |
| 13) 성폭력 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 | 1991. 5. |

2. 기획 단행본

- 「조용히 소리질러라 이웃이 듣는다」
에린피씨 지음. 김진숙, 박은주 옮김. 일월서각 발행 1986. 4.

1. 도서목록

- 여자는 왜, 서진영, 동녘
- 매맞는 여성, 헬마틴(곽선숙 역), 흥성사
- 가정폭력, 김광일, 탐구당

2. 논문, 자료 목록

-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2년)
- 아내 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명선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4년)
- 아내 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연구, 김경화(성대 석사학위 논문, 1985년)
- 구타당하는 아내 50례의 정신의학적 연구,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1985년)
-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조사,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1985년)

